

손진두 피폭자건강수첩 재판 상고심 판결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 1978.3.30 판결)

(소위 “손진두 판결 (孫振斗判決) ”)

[→일본 전후 보상 재판 일람](#)

[→HOME](#)

1978.3.30 선고

상고인 후쿠오카현 지사 카메이 히카루 (亀井光)
위 지정 대리인 미노다 하야오 (蓑田速夫) 외 10 명
피상고인 손진두 (孫振斗)
위 소송 대리인 야마시타 카츠히코(山下勝彦) 외 2 명

주 문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1957 법률 제 41 호.이하 ‘원폭의료법’이라고 함.)은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피폭자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라 불법 입국자인 피상고인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한 것은 이 법 3 조를 잘못 해석 및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폭의료법은 ‘히로시마시 및 나가사키시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폭자가 지금도 놓여지고 있는 건강상의 특별한 상태를 감안하여, 국가가 피폭자에 대해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그 건강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법 1 조)하는 것이며, 피폭자가 같은 법 3 조에 의거하여 그 거주지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 (거주지가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키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의 시장.이하 같음.)에 신청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받았을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 있어서, 위 피폭자에 대해 매년 일반 검사 및 정밀 검사에 의한 건강 진단과 그것에 근거한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같은 법 3 조 내지 6 조, 같은 법 시행규칙 6 조) 또한 후생대신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상해 작용에 기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폭자에 대하여,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원자폭탄의 상해 작용에 기인한 것을 인정한 후, 지정 의료 기관에 의한 필요한 의료의 급부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의료비 지급을 하고(같은 법 7 조 내지 14 조), 또한 일반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치료를 받은 피폭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일반 질병 의료비를 지급하는(같은 법 14 조의 2 내지 14 조의 7)

등을 정하고, 이들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20 조). 피폭자는 종전부터 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장애에 대해 일반 상병자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건강보험법 등의 각종 의료 보험법 혹은 생활보호법 등에 의한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피폭자의 특별한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욱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폭의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이, 원폭의료법은 피폭자의 건강 면에 주목해 공비에 의해 필요한 의료의 급부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점에서 보면 이른바 사회보장법으로 다른 공적 의료 급부 입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위 입법이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원자폭탄 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장애가 일찍이 예를 들지 않는 특이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장애가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게다가 피폭자의 대부분이 지금도 생활상 일반 전쟁 피해자보다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원폭의료법은 이러한 특수한 전쟁 피해에 대해 전쟁 수행 주체였던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그 구제를 도모한다는 일면을 가지는 것이며, 이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거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 법률이 피폭자의 수입 또한 자산 상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전액 공비 부담을 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은 단순한 사회보장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바이며, 위의 국가보상적 배려의 일단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본의 전쟁피해에 관한 다른 보상 입법은 보상 대상자를 일본국적을 가지는 자로 한정하고 일본 국적의 상실을 권리 소멸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지만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1 일조 2 호 및 3 호, 14 조 1 항 2 호, 24 조, 31 조 1 항 2 호,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 4 조 3 항, 6 조 1 항 등), 원폭의료법이 굳이 이 종류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피폭에 의한 건강 장애의 특이성과 중대성 때문에, 그 구제에 대해서 내외인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다름 없어, 이 법률이 국가보상의 취지를 겸비한 것으로 보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폭의료법의 복합적 성격으로 보면 일반 사회보장법에 대해 이를 외국인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이가 의거하는 사회연대와 상호부조의 이념으로 보아, 우리 국내에 적법한 거주 관계를 가지는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원폭의료법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원칙이 전제로 되어 있다고 해야 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 법률이 피폭자가 놓여 있는 특별한 건강 상태에 주목하여 이를 구제한다는 인도적 목적의 입법이며, 그 3 조 1 항에는 우리나라에 거주지를 갖지 않는 피폭자도 적용 대상자로서 예정한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부터 생각하면, 피폭자로서 우리나라에 현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현재하는 이유 등의 여하를 묻지 않고, 널리 이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이 법률이 가진 국가보상의 취지에도 적합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피폭자의 경우에 대해 부연하여 말하면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입국관리법령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으며 신속하게 퇴거강제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폭자 구제라는 관점을 중시한다면, 불법 입국한 피폭자도 실제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건강 상태에 놓여 있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피폭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원폭의료법의 인도적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불법 입국한 피폭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자비로 필요한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것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 법의 적용을 거부되는 것이 의료 기회 그 자체를 잃는 것으로 직결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입국한 피폭자에게 이 법의 적용을 인정할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한 퇴거강제 절차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므로, 위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외국인 피폭자의 불법 입국을 조장하게 되거나 입국관리제도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하는 우려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하고, 또한, 위 퇴거강제에 의해, 불법 입국한 피폭자가 단기간 밖에 이 법의 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이의 급부가 완전히 무의 또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국민의 세금 부담에 의존하는 국가의 급부를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해야 하지만, 원폭의료법은 피폭자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입법이며, 엄정한 입국관리하에서는 소수인 불법 입국자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해도 이로 인한 재정상의 부담은 부득이하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불법 입국자의 단속과 그 사람에 대한 원폭의료법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여야 하며, 이 법을 외국인 피폭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불법 입국자를 특별히 제외해야 하는 특별한 실질적, 합리적 이유는 없고, 그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더욱 잘 적합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법은 불법 입국한 피폭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피폭자이며, 1970.12.3, 대한민국에서 사가현 히가시마쓰우라군 진제이쵸 나고야 쿠시우라항 (佐賀県東松浦郡鎮西町名護屋串浦港)에 불법 입국한 직후 출입국관리령 위반의 현행범으로서 체포되어 신병을 구속된 채 유죄의 실형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그 사이에 퇴거 강제령서 발부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1971.10. 5, 상고인 지사에 대해 원폭의료법 3 조에 근거해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 정규의 거주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상고인은 불법 입국에 의한 형 집행과 퇴거강제 절차를 위해서만 우리나라에 현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에 있는 불법 입국자라고 해도 피폭자인 이상 원폭의료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피상고인이 피폭 당시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전후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도 감안하면, 국가적 도의로서도 수긍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아서, 상고인 지사의 위 각하 처분을 위법이라고 한 원심 판단은 그 방론 부분의 여부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이 정당으로 시인할 수 있어, 원심 판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사건소송법 7 조, 민소법 401 조, 95 조, 89 조에 따라 재판관 기시 세이이치(岸盛一)의 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기시 세이이치(岸盛一)의 의견, (생략)¹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

재판장재판관	기시 세이이치 (岸盛一)
재판관	기시가미 야수오(岸上康夫)
재판관	단도 시게미츠 (團藤重光)
재판관	모토야마 토오루(本山亨)

¹ (역주) 피폭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점이 상고 이유에 포함되지 않아서, 원심 판단에 따를 밖에 없다는 의견.